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5 선고 2017가단5041609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피 고 1. 주식회사 A

변론 종결 2018. 1. 25

판결 선고 2018. 4. 5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,275,581원과 그중 90,485,901원에 대한 2016. 12.15.부터 2017. 4. 3.까지 연 10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15. 11. 9.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고 한다)과 보증원금 9,000만 원,보증기한 2016. 11. 8.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.

피고 회사는 2015. 11. 10.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,이에 원고는 2016. 12. 15. 위 은행에 90,485,9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.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약금 177,530원이 발생하였고,원고는 대지급금 1,612,150원을 지출하였다.

따라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,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원금과 위약금,대지급금을 합한 92,275,581원과그중 대위변제 원금 90,485,901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일 2016. 12. 15.부터 피고들이 소장 부분을 모두 송달받은 날까지는 약정 손해금을인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김인택